

## 시리아 난민의 이주문제에 대한 분석 : EU의 수용정책을 중심으로

|김 중 관\*|  
Kim, Joong-Kwan

### **An Analysis on Syrian Refugee's Migration Issue: Focusing on the Assessment of the EU Policy**

The objectives of research is to assess the issue on Syria refugee's migration and their final goal place and their condition against the programs and policies and the principles of EU system. The flooding of Europe by countless waves of refugees may be the result of the strategic depopulation of Syria. At the same time, the refugee movement which is to decrease the capacity of a EU member government.

This paper discussed on the capacity of the labor force that is fleeing Syria on account of having language skills, money, some connections. European countries have reached the outlines for a possible deal within member countries. EU committee have tried to get a proper solution how to manage refugees in Europe community. The condition of each member countries are different to each other. Germany objected to the closure of the western Balkan route used by refugees and migrants travelling from Greece to northern Europe. Actually, European unity has been stretched to breaking point, with countries taking unilateral action to reintroduce border controls across the passport-free Schengen zone. It should be work as a leverage for controls to be finished the end of the tragedy of Syrian refugees.

---

\* 동국대학교 서울 사회과학대학 교수, E-mail: marcojk@dongguk.edu



In this paper, we conclude that the EU hardly get the integrated common European asylum policy in near future and there is no prospect to share the unitary process in Europe. And expect to the refugees will have their own way of doing things, keeping their own hopes not to violated of their human rights till the final goal.

[Key Words: Syria, EU, Arab, refugee, Immigration policy, Social integration]

## I. 서론

아랍 무슬림 난민의 집단 이동의 유인과 이동경로 및 정착 환경과 연계하여 논의가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시리아 중심의 아랍역내의 정치변동 및 중동을 둘러싼 주요 패권의 향방에 대해서도 우려가 높아졌다. 특히 시리아 난민<sup>1)</sup> 문제는 중동지역 뿐만 아니라, 유럽전체 국가에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영국은 이런 이유 근거로 2016년 6월 EU탈퇴를 선언하였다. 시리아 난민의 유럽 국가에 미치는 영향 등의 배경에 대한 이해와 관련 당사국의 정책 및 향후 전망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시리아 내전이 장기화 되면서 인근 요르단, 레바논을 포함하여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폴란드 등 유럽으로 이동한 인구가 2016년 1월 기준, 인구 총 2300만 명 중 현재 1천만 명에 육박하였다. 난민들은 독일, 스웨덴, 헝가리, 이탈리아, 프랑스로 정착을 희망하는데, EU에서는 불법 유입인구(illegal border crosser)가 EU 회원국에 망명신청(asylum application)을 승인을 받아 입국이 허가되는 경우에만 난민(refugee), 혹은 망명자(asylum seeker)로서 지위가 인정된다. 난민 유입은 지중해 경로, 터키를 통하여 그리스로 향하는 동부 지중해 경

---

1) 난민(難民, refugee)은 전쟁이나 이념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나 도피하는 사람, 즉, 이념적 박해, 전쟁, 테러, 빈곤, 기근, 자연재해를 피해 다른 나라로 망명한 사람을 말한다. 난민의 공식적인 개념은 1967년 제네바 협약에서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에 명시된바와 같이 전쟁이나 기타 폭력에 의해 원래 주거지를 떠나게 된 사람들을 지칭하게 되었다.



로, 발칸반도에서 헝가리로 유입되는 경로가 일반적이다.

대규모 난민 유입은 단기적으로 수용국의 수요 증가 및 실업률 증가 등을 통해 국민경제 기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소득수준, 경상수지, 실질임금, 정부부채 및 재정수지 등 거시경제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sup>2)</sup> EU는 공동체로서의 집단적 정책화를 통해서 난민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 보장, 망명관련 처리절차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기준 및 각국의 난민 관련 정보 공유 등 난민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구축하고, 난민의 유입경로, 수용 및 정착에 대한 관리장치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리아 난민의 유입과정과 EU의 대응에 대한 분석을 목표로 시리아 난민의 유럽 유입에 집중한다. 세부적으로, 아랍 난민의 지위와 유입조절 계획 등을 살펴보고, EU의 난민관리체제와 각국의 입장 분석을 통하여 난민 유입이 유럽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소득, 고용 및 재정으로 나누어 분석한 EU의 연구 결과에 대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 II. 아랍난민 발생 현황

### 1. 선행연구 분석

시리아를 포함한 아랍지역으로 부터의 난민 문제는 2014년부터 그의 심각성이 논의되어 왔으며, 2015년과 2016년에 집중적으로 연구가 확대되었다. 특히 유럽국가에 난민의 대량 유입에 대한 각국의 이해관계는 단기 비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장기적으로 난민의 사회 통합 여부 및 경제적 잠재력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였다. 이에 Fratzscher & Junker(2016)는 난민의 비용에 따른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즉 난민유입으로 노동 시장의 기대고용에

2)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분석에 따르면, 난민 유입은 EU 28개국 전체 GDP를 2016년 0.14~0.21%, 2017년 0.18~0.26% 증대시키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대한 성장은 단기적으로 생산성이 저하 될 수 있으며, 이주민 노동자가 더 생산적 일 수 있다하더라도 장기적인 편익 측면에 그 비용을 초과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주요 난민의 이동경로에 따른 위험이 급증하였으며, 각 지역 국가별 국경통제의 기술적인 실행효과 및 이에 따른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Togral Koca(2015)은 시리아를 탈출 난민은 배타적 군사 및 기술이 국경 사례를 포함한 안보 측면에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유럽 연합 및 기타 국가도 인도주의적 책임을 가지고 아랍망명 희망자에게 자국의 국경을 개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난민의 발생 동인 분석과 이에 대한, 아랍 아프리카 각 지역 국가의 상황에 따른 대응이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Moses Okello(2016)는 현재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이주민의 발생을 전쟁과 박해의 요소로 설명하면서, 난민 발생의 동인을 실업률과 소셜 미디어의 영향 및 빈곤 등이라고 분석하였다.

특히, 대규모 난민이주 상황에서 기독교 문화와 이슬람 등, 문명 간의 이질성이 극명하게 부각되고 있다. Bolborici(2015)는 유럽으로의 아랍인의 대규모 이주가 2015년에 절정에 다다르며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는데, 아랍의 입장이나 이슬람의 전통적 관습을 고려하지 않고, 중동 및 아프리카에서 서구 민주주의를 이식하는 행태가 새로운 문화적 갈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Rogers, Kate(2015)는 아랍난민 위기는 유럽경제에 활력이 될 수도 있어서 난민 수용국으로써 역사적 도전, 즉, 성장이 기대되는 반면, EU의 전통적 체제가 붕괴될 수도 있는 위기의 문제라고 분석하였다.

## 2. 아랍 난민의 현황과 유입 과정

시리아 내전 이후, 난민 발생률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데, 아시아와 아프리카로부터 유입되는 난민을 포함하여 2014년 기준, 유럽의 불법 유입인구 수는 28만 3500명으로 전년대비 264.1% 증가하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2011년 아랍의 민중봉기로 유럽 내 평균유입율의 2배를 넘어서는 수치이다.



2015년 상반기 불법 유입민 수는 23만 250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sup>3)</sup> 망명 신청 건수는 2014년 약 62만 7천 건으로 전년대비 145.4% 증가했으며, 2015년 10월 까지 집계된 난민 신청 건수는 99만 5800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편, 인접한 중동 국가들에 등록된 난민 수는 터키에는 193만 명, 레바논에는 111만 명, 요르단에는 62만 명의 난민이 수용되어 있으며, 그 외 팔레스타인이나 이라크 난민까지 합치면 요르단의 경우 인구의 50% 이상, 레바논에는 인구 25% 이상이 난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우디와 UAE도 각각 백만 명 이상의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4)</sup>

〈표 1〉 주요난민의 아랍지역 유입 현황

지역		난민 유입현황
레반트 지역	레바논	150만(추정 2015.12), 104만8275(등록)
	요르단	126만5천(추정 2015.11), 64만2868(등록)
	이라크	23만9천(추정 쿠르디스탄)
		26만(추정 2015.3), 24만6589(등록)
팔레스타인	1천(추정 2013.12)	
GCC 지역	사우디	42만(추정 장기체류 2015)
	UAE	24만2천(추정 장기체류 2015)
	쿠웨이트	15만5천(추정 장기체류 2015.6)
	카타르	4만(추정 장기체류 2015) 42(등록 2015)
	바레인	3500(추정 2015.6)
북 아프리카	이집트	11만9665(등록)
	알제리	4만3천(추정 Nov 2015), 5721 (등록 2015.11)
	튀니지	4천(추정 2015.9)
	리비아	2만6672(등록 2015.12)

주) 481만2993명 난민 등록(2016.3), 660만명 난민 및 이주자 추정(2016.1)  
 2016년 2월 기준, 시리아 국적 국경도착자 추정, UNHCR 등록 난민, 난민 신청자, 노동비자 장기체류 및 재거주 난민.

자료: Refugees of the Syrian Civil War

[https://en.wikipedia.org/wiki/Refugees\\_of\\_the\\_Syrian\\_Civil\\_War](https://en.wikipedia.org/wiki/Refugees_of_the_Syrian_Civil_War)

- 3) EU의 경계를 넘어온 불법 유입민은 성별로 남성 71%, 여성 11%, 성별 미상 18%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18세 이상 성인이 83%, 미성년자 15%, 연령 미상 2%로 나타나고 있다.
- 4) 일본은 2015년 난민인정신청자 전체 1만3831명 중 난민 인정자수 27명으로 확정 발표했다. 난민 신청자는 5년 연속 증가한 7586명 중 인정된 사람은 2014년보다 16명 증가한 숫자이다(교토통신, 2015.5)





〈표 2〉 주요난민의 EU 각국 및 기타지역 유입 현황

주요국가	유입 현황
독일	48만4000 (유입추정 2015.12) 30만6703 (신청 2015.12)
그리스	49만6119(2016.5 도착) 5만4574(2016.3 추정) 5615(신청 2015.12)
스웨덴	10만7966 (신청 2015.12)
헝가리	7만2505 (신청 2015.12)
오스트리아	3만8385 (신청 2015.12)
네덜란드	3만698 (신청 2015.12)
덴마크	1만9433 (신청 2015.12)
불가리아	1만7527 (신청 2015.12)
벨기에	1만5744 (신청 2015.12)
스위스	1만2822 (신청 2015.12)
노르웨이	1만3993 (신청 2015.12)
프랑스	1만402 (신청 2015.12)
영국	9292 (신청 2015.12) 5102 (재거주 2015)
스페인	8365 (신청 2015.12)
키프러스	3464 (신청 2015.12)
몬테네그로	2975 (신청 2015.12)
이탈리아	2538 (신청 2015.12)
루마니아	2525 (신청 2015.12)
몰타	1222 (신청 2015.12)
핀란드	1127 (신청 2015.12)
마케도니아	40만 (유입추정), 2150 (신청 2015.12)
몬테네그로	2975 (신청 2015.12)
크로아티아	5000 (추정 2015.9) 86 (신청 2015.12)
코소보	31만3314 (신청 2015.12)
아르메니아	1만7000 (추정 2015.6)
몰타	1222 (신청 2015.12)
터키	274만8367(등록 2016.3)
러시아	5000 (추정 2015)
말레이시아	5000 (추정 2015.8)
미국	4035 (재거주)
캐나다	4만7270 (신청 2016.5), 3만3(승인), 2만7190(재거주)
오스트레일리아	4500 (2015)
브라질	9000 신청, 2097 승인 (2015.11)

\* 자료 및 주는 표 2-1과 같음  
아랍국가 제외하였음



2015년 11월 EU와 터키가 난민사태 및 테러저지 관련 상호공조에 합의하였고, EU에서 터키의 난민수용을 위해 30억 유로의 재정보조지원 및 2016년부터 터키 국적자의 EU비자면제를 합의하였다(Bloomberg, 2015.11.30; Deutsche Welle, 2015.12.14). 2015년12월14일에는 5년간 중단되었던 터키의 EU 가입협상이 재개되었다. 실제로 시리아에서 가까운 터키를 통과하는 경로를 주로 이용하게 되므로, 결국 터키에서의 난민 수용여부가 EU로의 난민유입 규모에 탄력성이 크기 때문이다.

<표 3> EU 유입 주요 국가별 난민 유입 추이 (단위: 명)

	2011	2012	2013	2014	2015
시리아	1616	7903	2만5546	7만9169	6만8912
에리트리아	1572	2604	1만1298	3만4586	1만8521
아프가니스탄	2만2994	1만3169	9494	2만2132	3만7884
코소보	540	990	6357	2만2069	2만3146

자료: Frontex, [www.frontex.europa.eu](http://www.frontex.europa.e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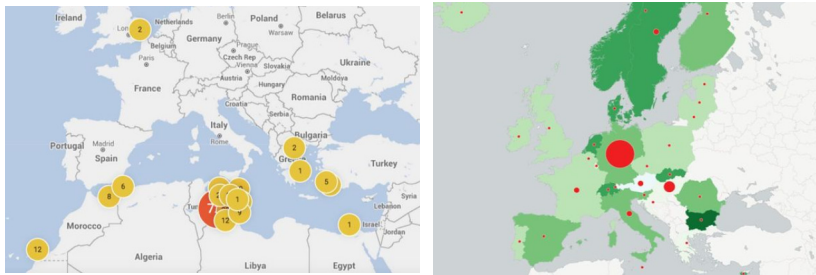
시리아 탈출 난민의 99.3%가 중부 지중해 경로와 동부 지중해 및 서부 발칸 경로를 통해 입국했으며, 에리트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출신 불법 유입민도 대부분 지중해 경로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EU에 불법으로 유입된 난민은 약 7만9200명(27.9%)으로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에리트리아, 아프가니스탄 출신 유입도 확대되어가는 상황이다 (2015년 기준).

난민의 망명 신청 건수를 통해 정착희망 우선지역을 선택한 요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독일이 유럽에서 가장 많은 망명신청을 하였는데, 이는 2012년 이후 유럽에서의 망명 신청은 다른 EU 회원국에 비해 실업률이 낮고 경제성장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독일에는 2014년에 약 20만2600명이 망명을 신청했으며, 망명처리 건수는 독일 9만7275건으로 집계되었다. 2015년 10개월간의 망명신청 집계치가 전년대비 69.6% 증가하였다.



독일 이외에는 난민에게 우호적인 스웨덴과 국경 지역인 헝가리와 이탈리아, 그리고 무슬림 비중이 비교적 높은 프랑스 등에 집중되고 있는데, 2014년 기준, 망명 처리 건수는 프랑스 6만8500건이다. 프랑스는 2014년에 전년대비 망명 신청 건수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망명 승인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지중해 해로를 통해서 접근 가능한 이탈리아에는 2014년에 약 6만4600명, 2015년에는 10월까지 약 6만9600명이 망명을 신청하였고, 스웨덴은 3만9905건으로 나타났다.<sup>6)</sup> 그리고 헝가리는 5445건으로 쉥겐의 동쪽 경계이면서, 시리아와 가장 가까운 육로로 진입이 가능하여서 헝가리에 망명 신청은 2014년에 4만2800명으로 증가세를 보였고, 2015년에는 10월까지 17만6600명으로 급증하였다. [그림 2-1]의 우측의 자료에서의 붉은 점은 짙은 녹색으로 표시된 유럽 국가에 망명신청을 한 숫자이며, 전체 망명신청 중 42%가 독일정부에 제출되었다.

[그림 2] 난민 사고의 주요 지점과 유입 규모  
(2-1) (2-2)



자료: CartoDB user Raul92S, Mapping the Syrian refugee crisis across Europe  
<http://www.wired.co.uk/article/europe-syria-refugee-crisis-maps>

난민들의 불법이주 과정에 지속적으로 사망사건이 보고되고 있는데, EU집행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2013년 이후 EU의 이주계획을 실행하였다. [그림 2-2]는 2000년 이후 유럽에 피난처를 구하는 동안 사망한 이주자를 추적하여 주

6) 스웨덴에서의 망명 관련 처리 건수가 독일의 41% 수준이지만, 2014년 이후 망명 승인 비중이 76%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요 사망 지점을 확인한 자료이다. 사고 난민들은 대부분 익사하였으며, 대부분 지중해 튀니지와 이탈리아 사이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2 좌측 자료 참조).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 지중해에서 사망한 난민은 모두 251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1855명보다 35%가 증가했다. 특히, 리비아나 다른 북아프리카 국가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경로는 터키에서 그리스로 가는 지중해 연안 경로보다 훨씬 더 사망률이 높다.

### III. EU의 난민 유입 문제

#### 1. 거시경제적인 요인

##### 1) 난민 유입의 경제효과

EU에 대규모 아랍난민 유입은 거시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차적으로, 내수 및 고용 확대 등을 통해 실질 GDP 증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차적으로 소득수준, 경상수지, 실질임금, 정부부채 및 재정수지 등의 거시경제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난민 유입은 단기적으로 공공지출의 증가를 가져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정부부채 및 재정수지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효과도 있지만, 반면 대규모 난민 유입은 실질 임금을 낮추어 전체적인 소득 수준을 하락시킬 수 있으며, 경상수지에도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장기적 측면에서 난민의 노동시장 유입의 효과는 일시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난민의 정착과 훈련과정 등을 거쳐 거시경제 전반에 중장기적·복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EU내 28개 회원국은 노동시장 구조는 물론 인적자원 수준과 고용 관련 제도에 있어 상당부분 차별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난민 유입의 효과에 있어서도 회원국별로 파급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 2) 난민 유입의 문제점 분석

첫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랍 난민의 유럽사회 유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요인은 노동시장에서 난민의 정착과 교육훈련이 21세기의 정보 통신의 발달로 과거보다 쉽고 빠르게 정착될 것이라고 유럽집행부 자료는 분석하고 있으나, 거시경제 측면에서 임금 하락과 더불어 사회복지비용의 증가 압력도 확대될 것이다. 유입 이주민이 노동시장에서 원주민 노동력과 보완관계가 되는 전제 조건은 일차적으로 원주민의 노동숙련도 수준에 달려있다. 문제는 ① 이주 노동력의 언어 소통의 수준이나 문화 충격과 같은 경제 외적인 변수가 존재하게 될 것이고, 수용국 산업구조의 고도화 정도에 따라서도 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② 특히 동유럽의 경우 현지 산업구조의 안정도가 비교적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주 노동력이 현지 사회에서 대체재 역할을 하면서 고용시장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③ 한편, 전반적으로 숙련도가 균형도가 낮은 이주 노동력이 현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비 및 보조금이 비경제적인 요인으로 분석된다. 결과적으로 동유럽의 경우, EU 역내 전체에서 저숙련노동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대규모 난민 유입에 따른 저숙련 노동시장은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비경제적 측면에서 무슬림난민 유입으로 사회 불안정성이 확대 될 가능성이 있다. 2015년 11월에 있었던 파리테러에 난민출신 테러분자가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난민유입을 경계하고 있다. ① 실제로 난민과 테러분자를 분명히 구분하기 어렵고, 2016년 벨기에 테러 미수 사건에서도 난민을 가장한 IS 출신이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일차적으로 난민 입국 시 지문등록을 통한 신원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테러분자를 명확하게 선별할 가능성은 낮다(Euractiv, 2015.11.15). 이에 따른 사회 안전 비용이 확대될 것이다. ② 결국, 난민 유입에 따른 사회통합이 약해지고 장기적으로 문화정체성도 약화될 것이다. ③ 취약계층의 원주민으로부터 역차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서 사회 불안정이 가속될 것이다. 다문화정책의 경험적



측면에서는 대부분 난민이 무슬림으로써 전통적인 기독교 사회에 동화되기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 2. 난민 유입의 경제적 효과 계량분석

### 1) 난민 유입의 효과 추정의 예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입되는 난민의 노동숙련도가 EU 원주민과 비유적으로 비슷한 수준일 경우와 난민의 숙련도가 낮은 경우로 나누어 두 가지 가정에 대한 가상실험을 통한 계량분석을 시도하였다.

〈표 4〉 난민 유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조건	2016	2017	2018	2019	2020
GDP	a	0.21	0.26	0.27	0.26	0.26
	b	0.14	0.18	0.17	0.17	0.17
1인당 GDP	a	-0.15	-0.06	-0.05	-0.06	-0.06
	b	-0.22	-0.14	-0.14	-0.15	-0.15
고용	a	0.22	0.30	0.31	0.31	0.31
	b	0.18	0.25	0.28	0.29	0.29
경상수지 (GDP 대비 %)	a	-0.02	-0.03	-0.03	-0.03	-0.03
	b	-0.01	-0.02	-0.03	-0.03	-0.02
실질임금	a	-0.20	-0.25	-0.22	-0.18	-0.16
	b	-0.12	-0.18	-0.20	-0.20	-0.20
정부부채 (GDP 대비 %)	a	-0.08	-0.03	0.01	0.01	-0.02
	b	-0.02	0.06	0.14	0.19	0.21
재정수지 (GDP 대비 %)	a	-0.04	-0.04	0.00	0.03	0.05
	b	-0.07	-0.08	-0.05	-0.02	0.00

주) 각 항목별 증감 기여율(%).

a: 유입 이주민의 노동 숙련도가 EU 원주민과 동등한 수준이라는 가정.

b: 유입 이주민의 노동 숙련도가 EU 원주민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가정.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5), *European Economic Forecast*, p. 51-52. (Autumn)

이러한 EU 전체에 대한 난민 유입의 효과 추정에서는 EU 집행위가 난민 유입 추이를 바탕으로 2015년 말까지 100만 명의 난민 유입과 2016년에 150만 명과 2017년에 50만 명이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예측 내용을 가정하고, 난민 신청자 중 난민으로 인정되는 비율을 50%로 설정하고 있으며, 난민으로 인정된 인원 중 약 75%를 노동가능인구로 추정하여 계량 분석한 결과이다.

<표 4>의 분석내용은 가상실험의 분석결과로써, 첫째, 난민 유입은 EU 28개국 전체 GDP를 2016년 0.14~0.21%, 2017년 0.18~0.26%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EU 회원국 가운데 서유럽의 국가군은 난민과 노동수련도 격차가 크고 동유럽 국가군과 노동 숙련도가 동등하다는 전제하에 실시한 것은 국민경제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산업구조임을 감안할 때 신뢰성은 크지 않으며 경제외부효과에 대한 변수가 상정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상존한다.

둘째, 서유럽국가군은 동유럽 국가군에 비하여 상호 보완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유입되는 난민의 노동숙련도 수준이 원주민과 비슷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유럽국가군의 경우에 비해 원주민보다 낮은 서유럽군 국가들의 경우에 GDP에 대한 긍정적 영향과 실질임금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현실적으로 크지 않다.

## 2) 평가에 대한 시사점

난민 유입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함에 있어 첫째, 난민의 규모 및 특성과 함께 난민을 수용하는 EU 회원국별 다양한 차별성을 정형화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구체적이며, 정교하고 다양한 변수에 대한 가정이 요구되는데, 일반적으로 난민의 노동숙련도는 언어문제에 중점을 두고 여타의 변수에 대하여는 난민수용국의 평가가 단순평가되고 있어서 비약적인 결과치로 평가된다(European Commission, 2015; 50).

둘째, EU에 유입되는 난민의 규모는 물론 연령 및 성비 구성과 노동숙련도 등에 대한 인구통계적인 자료 분석이 선행되어야, 난민유입효과에 대한 가상실



협의 신뢰도가 높다. 그런데,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기본조건이 유입 이주민의 노동숙련도가 원주민과 동등한 수준인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 항목으로 어떻게 세분하여 변수에 입력하느냐는 문제가 일차적이고, 경제적 효과가 노동시장에 한정하는 것도 상당히 단순분석이어서 합리성이 떨어진다.

셋째, EU 회원국 가운데 난민들이 한시거주나 단기거주하는 국가와 정착희망 국가와의 사이에 효과에서 상당한 편차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실질적으로 임시 거주기간의 노동집약도는 매우 낮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sup>7)</sup>

## IV. EU의 난민정책과 회원국별 입장에 대한 평가

### 1. EU 차원의 난민정책

#### 1) EU의 난민정책 수립과 개발

EU집행부는 공동체로서의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난민에 대한 책임을 모든 회원국들이 분담하며, 역내 안전을 보장하는 방향의 기본 정책을 수립하였다. EU는 난민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공동체로서의 기준과 정책을 중심으로 정비하고 있다. EU집행부는 2008년 “난민정책계획(Policy Plan on Asylum)”의 단계별 계획을 발표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08). 1단계(CEAS 1)로 1999~2005년에 EU의 난민정책 수립과 개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2단계(CEAS 2)에서는 EU회원국 법령간 난민보호 기준의 조화 및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협력, 그리고 EU 회원국과 비회원국과의 연대 강화와 책임 공유라는 목표로 정책의 합리적 시행을 담보하고 있다. EU의 난민정책은 난민의 기본적인 권리보장과 망명관련 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기준제시 및 관련 정보 공유 등의 업무를 법령을 근

7) 이탈리아, 그리스, 헝가리 등이 대표적인 임시 거주국이며, 난민들의 최종정착 희망국가는 난민에게 법적 지원이 큰 독일, 스웨덴, 프랑스, 영국 순이다.



거로 실시되고 있다. ① 난민수용조건 지침(Reception Conditions Directive),<sup>8)</sup> ② 난민자격조건 지침(Qualification Directive),<sup>9)</sup> ③ EURODOC 지침(EURODAC Regulation),<sup>10)</sup> ④ 더블린 규정(Dublin Regulation)<sup>11)</sup>이 수립되었다.

〈표 5〉 EU의 난민 관련 지침 및 규정

명칭		내용
지침	수용조건	- EU 회원국의 난민의 기본권을 보장을 통한 난민수용조건에의 일반 기준으로 난민의 수용 시 주거, 식사, 보건, 의료 및 심리관리 및 고용 등 지원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개별 평가 및 상담 등으로 특별한 관심을 요하는 난민이나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 등에게 필요사항을 제공 - 망명 신청자는 최장 9개월까지 고용기회를 보장
	자격조건	- 난민인정 이후 주요보장 내용으로, 강제송환으로부터의 보호, 거주 허가증, 여행증명서, 고용기회 제공, 교육기회 제공 등 사회 복지, 보건, 주거, 사회통합을 위한 시설 지원 - 어린이 및 노약자를 위한 특별보호 업무 등 인도주의적 보호 제공의 기본원칙을 제시
규정	EURODOC	- 각 난민의 신원을 확보를 위하여 출신국명, 성별, 망명 신청정보 및 지문정보 등, 개인정보를 회원국의 이민당국간 공유 - 범죄 및 테러 예방 차원에서 회원국 경찰이나 Europol의 정보 조회 협조 가능
	더블린	- 회원국의 난민보호 책임과 망명 신청에 대한 심사조건을 명시 - 개별회원국의 난민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거나, 다른 회원국에 비하여 난민 수가 과다할 경우, 지원 가능 - 사전준비 및 조기경보 등, 위기관리체계를 통한 효율적인 대응

시리아 내전이후, 난민의 대규모 유입으로 유럽의 공동난민정책<sup>12)</sup>의 법적적

8) Directive 2013/33/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June 2013.

9) Directive 2011/9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December 2011.

10) Regulation(EU) No. 603/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June 2013 on the establishment of 'Eurodac' for the effective application of Regulation(EU) No. 604/2013 and amending Regulation(EU) No 1077/2011.

11) Regulation(EU) No. 604/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June 2013.

12) EU의 공동난민정책은 1951년의 제네바 난민보호협정(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을 기반으로 출발하였다.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 내전과 코소보 내전으로 난민이 대규모 유입에 따라 대응정책 도입의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EU집행부 차원에서의 공동난민정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1999년부터 공동유럽난민제도(CEAS: Common European Asylum System)



용에 대한 입장이 각국별로 다르고, 사안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서 EU사회 통합에 장애가 되고 있다.

EU 전체 회원국 차원의 효율적인 공동대응 및 정책 수행을 위한 난민절차 지침(Asylum Procedure Directive)<sup>13)</sup>은 기본적으로 난민신청 처리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난민지위를 부여 혹은 철회 시 회원국간 최소한의 공동기준을 제시한 법이다. ① 일차적으로 국경 지역에서 최초 난민신청 시 6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② 처리과정에서 개별적·객관적·공명정대한 심사와 필요 시 통역 제공 등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진행해야 하며, ③ 자비로 법률자문을 받을 권리 보장 및 법원 항소 시 무료 법률 자문을 보장해야 한다. ④ 또한, 최종 심사결정 전에 비밀이 보장된 개인면담 기회를 제공하며, 특별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를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⑤ 한편, 난민으로써 보호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본국으로 송환 조치한다. 이는 동일인의 다회 재신청으로 인한 장기체류를 방지한다는 목적이다.

## 2) 난민에 대한 공동대응

EU 집행위는 2015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유럽이민의제(European Agenda on Migration)’를 제안하여 대규모 난민 유입에 대한 공동대응 및 공동 안보방위정책(Common Security and Defence Policy)을 수립하고, 국경 관리를 강화하였다. 유럽이민의제는 난민사태에 대한 신속대응과 사후관리 및 운영계획으로 구성되었으며, 9월에 제안된 두 번째 의제는 첫째 의제의 내용을 확대·구체화시키는 방향으로 논의되었다.

(1) 신속대응의 주요내용에는 ① 난민할당제(European relocation scheme), ② 정착제도(European resettlement scheme), ③Frontex 합동작전<sup>14)</sup>인 Triton과 ④

---

의 명칭으로 난민관련 법령 도입 및 기금운영 등 공동체로서의 대응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13) Directive 2013/32/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June 2013.

14) Frontex 합동작전(Joint Operations)인 Triton과 Poseidon은 EU 회원국이 공동으로 지중해 해상 순찰, 난민 구조 활동 및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임무로, 첫째, Triton작전은 이탈리아 주변의 중부 지중해를 관할지역으로 하며 이탈리아가 주도, 불가리아, 헝가리,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EU



Poseidon의 재원 확대, 그리고 ⑤ 1차 난민등록소(Hotspot) 설치 등이 있다.

첫째, 난민할당제는 난민유입이 대량 발생 시 최초 경계 진입국인 이탈리아, 그리스, 헝가리와외의 부담공유를 목적으로 각 회원국의 GDP 수준, 인구수, 실업률 및 기존 난민들의 정착현황에 따라 신규진입 난민 수를 배분한다. 일차적으로 EU가 수용하는 난민의 수가 전 세계 난민의 75% 이상인 국가인 시리아, 에리트리아, 이라크 출신 난민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둘째, 난민정착제도는 2017년까지 2만 명의 역외국 난민을 EU역내에 정착시킨다는 계획으로, 정착제도에 명시된 비율에 따라 회원국별로 난민 수를 할당한다.

셋째, 해상안전 강화는 지중해 통과 난민의 안전제고와 해상 범죄의 방지를 위해 Triton작전<sup>15)</sup>과 Poseidon작전(해상 난민 조사 및 구제, 범죄예방 활동)의 재원을 기존 재원의 3배인 8900만 유로로 확대시켜서 효과를 제고한다.

넷째, 1차 난민등록소(Hotspot)는 유럽난민지원청(European Asylum Support Office; EASO), Frontex, Europol 및 EU사법협력청(Eurojust)의 공조로 최초 도착지에서 난민의 신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문 포함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업무를 한다. 이를 위하여 난민 및 이민 관련 정보체계인 유럽이민정보망(European Migration Network)를 개발하였다.

(2) 사후관리 및 운영계획은 ① 비정상적 이민(irregular migration)에 대한 혜택 축소 ② 인명 구조 및 EU지역 국경 수호 ③ 공동난민정책 강화, ④ 합법이민

25개국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가 참여하고 있으며, 3800만 유로의 예산으로 운영한다. 둘째, Poseidon 작전은 에게 해를 중심으로 지중해 동부를 관할지역으로 하며 그리스가 주도하며, EU 20개국(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라트비아, 폴란드,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스페인, 스웨덴, 슬로바키아, 영국)과 아이슬란드 및 노르웨이가 참여하며, 1800만 유로의 예산으로 운영한다.

15) EU는 정상회담과 국무부 장관 회의를 거쳐 지중해 지역의 작전에 대한 기본 전략으로, 지중해 상의 난민구출작전을 소극적 체제인 ‘트리톤(Triton)’으로 전환하였다. 즉, 전방위적 구출작전은 중동 지역에서 해상탈출 숫자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작전 반경을 축소하였지만, 오히려 지중해를 통해 탈출하려는 난민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난민 사망자의 숫자는 전년과 비교해 50배가 증가하였다.



에 대한 정책 수정을 목표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난민신청대상 제외국가(Safe Countries of Origin) 명단을 작성·공유하고 각 EU 회원국이 합의한 기준에 따라서 박해, 고문, 비인간적 대우나 처벌, 폭행의 위협, 무력분쟁이 없다고 평가되는 국가<sup>16)</sup> 출신 망명신청자에 대한 승인절차를 신속하게 거치게 되고, 승인받지 못하는 경우 조속한 본국 송환조치를 시행한다.

둘째, 미승인 망명 신청자에 대한 효과적인 본국 송환을 위한 활동계획(EU Action Plan on Return) 및 공동의 편람(Handbook) 마련한다. 주요 활동계획에서 EU 기관 및 각 회원국의 상호공조와 더불어 제3국과의 협력강화를 통해서 난민지위 허가 및 망명승인거부 신청자를 고국으로 안전 송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Frontex송환국(Frontex Return Office)을 설치하고 모든 회원국에서 공통의 절차가 시행될 수 있도록 송환 편람을 제작한다.

셋째, 난민사태 관련 EU의 외교 업무를 활성화한다. 시리아 난민 유입의 주요 경유지인 터키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상호간 협력을 강화, 남부 지중해 지역의 밀입국 및 인신매매 조직을 감시, EU 해상군사작전(EUNAVFOR MED operation Sophia)강화,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연합, 소말리아, 리비아 등 아중동 지역과의 관계 강화 및 UN의 시리아 사태 논의 그리고 발레타 정상회의<sup>17)</sup>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넷째, EU집행위원회가 지역긴급신탁(Regional Emergency Trust Fund)을 조성하여, 시리아난민긴급신탁기금(EU Syria Trust Fund)과 아프리카 긴급신탁기금(EU Trust Fund for Africa)에 각각 5억 유로와 18억 유로를 준비하고 EU 회

16) 현재 12개 EU 회원국이 제출한 명단에는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코소보,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터키가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다.

17) 발레타 정상회의(Valletta Summit)는 2015년 11월 11~12일에 EU 및 아프리카 각국 정상들의 이민을 주제로 개최한 회의이다. 이 정상회의에서 난민, 망명 및 비정상적 이민 유입과 관련하여 5개 주요 영역 ① 비정상적 이민과 강요된 이동의 원인 규명 ② 합법적 이민 및 이동을 위한 협력 증진 ③ 이민자와 망명자에 대한 보호 강화 ④ 비정상적 이민, 밀입국, 인신매매의 방지 및 근절, ⑤ 귀국, 재허가 및 재통합을 위한 긴밀한 협력계획을 수립하고, EU 긴급신탁기금의 설립을 촉구하였다.



원국에 공동출자의 형태로 참여를 유도한다.

## 2. 난민에 대한 각국의 입장

### 1) 쉥겐국경규정 운용 현황

유럽 대륙의 국경은 1995년 이래, 쉥겐협정(Schengen Agreement)<sup>18)</sup>에 따라서 국가간 인구이동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난민의 대량 유입은 EU내 국경 관리 문제로 회원국간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 현실적으로 쉥겐 지역의 가장 동쪽이 EU의 국경에 해당하므로,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헝가리가 EU의 동쪽 경계를 이루며, EU의 남쪽 경계는 그리스와 이탈리아가 담당하고 있다.

현재 시리아 난민에 대한 쉥겐 참여국 국경의 경계강화는 대량유입 통제를 위한 일시적 대응방안으로 쉥겐 국경규정(Schengen Borders Code)의 철폐는 아니지만, EU의 체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쉥겐협정은 기본적으로 EU 회원국간 자유로운 인적·물적 이동을 보장함으로써 역내 가용한 투입요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약은 EU 경제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리아 사태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정착시키고 있는 EU의 난민정착규범은, 지속적으로 적용 및 실험이 되어서 실질적인 세계적 규범으로 발전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아랍지역 난민의 유입이 독일,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에 집중 정착하고 있어서, 이들 국가들이 강력한 국경관리 단계에 돌

18) 쉥겐협정(Schengen Agreement)은 유럽 역내에서 자유로운 인적이동을 보장하는 협정으로, 1995년에 발효되었다. 현재 28개 EU 회원국 중에서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아일랜드, 루마니아와 영국을 제외한 22개 회원국과 비EU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의 4개국이 쉥겐협정에 참여하고 있다. EU 법령(Council Regulation(EC) 2007/2004)을 근거로 설립된 Frontex(European Agency for the Management of Operational Cooperation at the External Borders of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와 EU 회원국 간의 공조로 출입국 관련 정보 공유 및 역외 국경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입한 상황이다.<sup>19)</sup> 한편, 역외국가인 노르웨이도 쉥겐 지역이어서, 2015. 11. 26~12. 26 기간에 난민의 대량 유입을 이유로 국경통제를 강화하였다. 프랑스는 2015. 11. 13~2016. 2. 26까지 파리 테러사건에 따른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내륙 및 항공을 포함하여 국경을 통제하였다. 이러한 쉥겐 참여국의 국경통제로 인해 쉥겐 해체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나(*The Economist*, 2015.9.19), EU 집행위는 ‘공공정책 혹은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위기상황에서 단기적 해결책’으로 인식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5: 12).

EU 집행위원회는 쉥겐국경규정이 한시적인 관리·통제를 통하여 융통성이 있게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역내 국경이 계속 유지될 경우 최종수단으로 그리스나 난민수용을 거부하는 동유럽국가를 제외하고 장기적인 쉥겐 지역의 범위를 축소 시행은 EU 통합의 체제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Spiegel Online*, 2015.12.10).

## 2) 각국의 입장

서유럽과 동유럽의 국가간 난민 수용에 대한 정책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유럽국가군의 경우, 테러와 난민은 사안이 다르다는 입장으로써 테러와 난민문제를 분리해서 별개로 논의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난민정책이 지속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반면, 동유럽국가군은 파리 테러를 계기로 자국의 안보에 위협을 이유로 난민수용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이다(*Business Insider*, 2015.11.15).

스웨덴이나 독일은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 할당제를 적극 수용하지만, 대다수의 EU 회원국은 대규모 난민수용에 대하여 거부 의사를 표명하였다. 독일은 2015년 9월 메르켈 총리가 유럽 및 독일의 난민수용을 적극 주장하였다.<sup>20)</sup> 그

19) EU 회원국 중 오스트리아(2015. 9. 16~2016. 2. 15), 독일(2015. 9. 13~2016. 2. 13), 스웨덴(2015. 11. 12~12. 20), 몰타(2015. 11. 9~12. 31), 헝가리(2015. 10. 17~26), 슬로베니아(2015. 9. 17 ~10. 16)가 대규모 난민 유입에 따른 국경통제를 실시하여 왔다.

20) 기민당(CDU)과 메르켈 총리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난민 정책은 차기 총리직 재선거반과 여건개선을 위한 절호의 기회였다(*Financial Times*, 2015.12.14).



러나 독일국민들은 여론이 양분되어 있으며, 난민수용소 방화 등 공격적으로 적대감을 표출하였다(*The Telegraph*, 2015.11.5). 한편 스웨덴에서는 극우정당을 제외한 정치권 전반에서 난민수용을 지지하고 있으나(*BBC*, 2015.10.23),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등의 동유럽 국가들은 난민할당제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2015년 9월22일에 진행된 EU 내무장관회의에서 4만명 할당에 이어서 추가 12만 명의 난민에 대한 할당제 실시 여부에 대한 투표가 가중다수결로 통과되었다. 당시에,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4개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리비아, 시리아, 중동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시리아 문제의 핵심요인인 미국이나 러시아 등 모든 주요 관계국이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Euractiv*, 2015.9.7). 폴란드의 유럽외무대표(*European Affairs*, Konrad Szymański 장관)는 폴란드가 난민할당제에 찬성할 수 없으며 국경 경제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Newsweek*, 2015.11.25).

결국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헝가리는 반대, 핀란드는 기권했고, 난민할당제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폴란드는 투표 시 찬성을 표시하였으며, 아일랜드, 영국, 덴마크는 로마조약(TFEU)에 근거하여 난민할당제 투표를 거부하였다.<sup>21)</sup> 영국은 2015년 순이민자수가 33만3천명으로 공표하고, EU 탈퇴를 통하여 자국의 난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은 2016년6월23일 국민투표를 통하여 EU탈퇴를 확정하였다. 앞서 영국정부는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영국 해협에서 난민 봉쇄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2016년5월31일 발표했다.

독일 중심의 서유럽국가 군은 동유럽 국가들의 난민수용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법적 명분으로 압박하여 정치적으로 EU의 분열을 야기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국경 관리강화 정책을 제도입할 경우 예산 할당은 물론 물류나 인적이동을 위해 국경통과 시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손실이 발생

21)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폴란드에는 사안에 따라 참여의무에 대한 예외 인정권(Opt-out)이 부여 되는데, 난민할당제는 이민 관련 문제이므로 자유, 안보 및 정의(area of freedom, security and justice) 관련 참여의무 예외가 인정된다.



하고 사회적으로 유럽 통합의 결속이 약화될 수 있다.

##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EU 집행위원회의 정책 수행과정과 각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난민이 지속적인 확대에 따른 EU의 체계적인 난민정책 전략이 초점을 맞추어 난민 수용국의 정치,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및 평가를 도출하였다. 각 장별로 논의된 내용에서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각국으로 지속적인 아랍 난민 유입은 수용국의 수요 증가 및 실업률 증가 등을 통해 국민경제 전반에 집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소득수준, 경상수지, 실질임금, 정부부채 및 재정수지 등의 거시경제지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난민수용국의 노동시장에 유입된 난민의 정착계획의 효율성에 따라 난민 유입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난민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노동시장에 신속하고 최적하게 진입시킴으로써 경제성장 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시리아 난민들의 이동 경로에서 일차적으로 인접국가인 터키에 유입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EU의 난민 유입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난민 유입 경로의 1차 경유국인 터키의 역할이 크고, 최종목적국가인 EU와의 정치적, 인도적 협력 체제의 중요성이 크다.

넷째, 난민 유입에 따른 수용국인 EU의 사회통합이 위축되고 장기적으로 문화정체성도 약화될 것이어서, 원주민 취약계층으로부터 역차별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질 것이고 이에 따른 사회 불안정이 가속될 것이다.

다섯째, 국제사회는 시리아 사태, 나아가 중동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시리아 문제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미



국이나 러시아 및 EU 등 모든 주요 관계국이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지적하는 시사점은 시리아 난민에 대한 기본적인 EU의정책의 장기적 측면에서 유럽 각국과 시리아에 상호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고, 문제의 핵심은 수용국에서의 난민의 통합이 충분한 추진력을 얻어 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도 난민들이 사회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는가 여부는 장기적 관점의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적인 예로써, 난민 수용을 둘러싼 유럽각국의 입장에서 공통분모를 확인하기 어려워서 영국이 탈퇴하였고, 장기적으로 동유럽국가들의 원활한 EU통합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대규모 난민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시리아와 중동 및 유럽의 지리적, 정치적 상황이 매우 상이하고, 이슬람의 영향력이 크지 않지만, 동북아 정치 상황에 따라서 남북한 대치구도가 변화할 수 있고, 자연재해의 원인에 따라서 대규모 난민문제의 발생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시사점을 가진다.

[주제어: 시리아, EU, 아랍, 난민, 이민정책, 사회통합]



## 참고문헌

### 1) 논문 및 저서

- Ana-Maria Bolborici(2015). “From the Arab Spring to the Arab Exodus in Europe,”  
*Bulletin of the Transilvania University of Braşov Series VII: Social Sciences*  
· Law, Vol. 8 (57) No. 2, 2015.
- Burcu Togral Koca(2016). “De-constructing Turkey’s “Open Door” Policy towards  
Refugees from Syria,” *Oxford Journals Law & Social Sciences International*  
*Jnl of Transitional Justice*, Special Issues 2016.
- Kate Rogers(2015). “Refugees could be a boost to the European economy,”  
*Reconsidering Appropriate Responses to Victims of Conflict*, edited by Juan  
E. Méndez (1), 19 November 2015.
- Katie Collins (2015). “Mapping the Syrian refugee crisis across Europe: in pictures”,  
*Wired security*, 11 Sep 2015.  
<http://www.wired.co.uk/article/europe-syria-refugee-crisis-maps>  
(retrieved: 2016. 6. 2)
- Marcel Fratzscher and Simon Junker(2015). “Integrating refugees: A long-term,  
worthwhile investment,” *DIW ECONOMIC BULLETIN*, No. 45+46/2015 of  
November 12, 2015.
- UNHCR (2015). “UNHCR: Total number of Syrian refugees exceeds four million  
for first time,” Press Releases. (2015. 7. 9).

### 2) 간행물

- BBC*, “Sweden’s asylum offer to refugees from Syria.” (2015. 10. 23).
- Bloomberg*, “EU, Turkey Agree on Means to Stem Refugee Flow to Europe.” (2015.  
11. 30).





*Business Insider*. “‘We are not terrorists’- Europe’s ‘open door’ refugee policy is already coming under assault.” (2015. 11. 15).

*Deutsche Welle*. “EU and Turkey open fresh chapter in accession talks.” (2015. 12. 14).

*Euractiv*. “Visegrad summit rejects migrant quotas.” (2015. 9. 7).

\_\_\_\_\_. “Paris attacks give EU leaders excuse to get tough on refugees.” (2015. 11. 15).

*Financial Times*. “Angela Merkel wins CDU backing on refugee policy.”

Kyoto News (2015. 5)

[http://www.47news.jp/korean/politics\\_national/2016/03/134928.html](http://www.47news.jp/korean/politics_national/2016/03/134928.html)

(retrieved: 2016. 5. 17)

*Newsweek*. “After Welcoming Refugees, Europe is Saying No More.” (2015. 11. 25).

*Spiegel Online*. “Coalition of the Unwilling: Merkel’s Plan B Could Mean End of Schengen.” (2015. 12. 10).

*The Economist*. “Europe starts putting up walls.”(2015. 9. 19).

*The Telegraph*. “German fireman refuses to respond to emergencies at refugee shelters.” (2015. 11. 5).

Wikipedia, “Refugees of the Syrian Civil War”

[https://en.wikipedia.org/wiki/Refugees\\_of\\_the\\_Syrian\\_Civil\\_War](https://en.wikipedia.org/wiki/Refugees_of_the_Syrian_Civil_War)

(retrieved: 2016. 6. 15)

### 3) 기관 자료

Directive 2011/9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December 2011.

Directive 2013/32/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June 2013.

Directive 2013/33/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June



2013.

European Commission(2015). *European Economic Forecast*, (Autumn).

European Commission(2008). “Policy Plan on Asylum: An Integrated Approach to Protection Across the EU,” COM(2008) 360 final.

Frontex. [www.frontex.europa.eu](http://www.frontex.europa.eu) (retrieved: 2016. 8. 21)

Regulation(EU) No 604/2013 and amending Regulation(EU) No 1077/2011.

Regulation(EU) No 603/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June 2013.

Regulation(EU) No 604/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June 2013.

논문접수일: 2016년 09월 20일

심사완료일: 2016년 10월 04일

게재확정일: 2016년 10월 06일